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박광현  
전화 02-3399-4866 / 팩스 0502-193-2112

## 보도자료

2024. 4. 3.(수)

### 제 목

##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수사 결과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1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재혁)는 지난해 12. 25. 04:59경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2명 사망, 27명 상해)을 수사하여 최초 화재 발생장소인 3층에 거주하는 70대 피고인을 종실화, 종과실치사상 혐의로 오늘(4. 3.) 구속 기소하였음

□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편성하여 ① 화재 현장 확인, ② 아파트 관리직원, 소방 화재조사담당자 등 참고인 조사, ③ 인적 피해가구 전수조사, ④ 대검 화재분석 및 재연 실험 등의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

- 피고인이 신문지, 쓰레기봉투 등이 쌓여 있는 방 안에서 담배를 계속 피우다 불씨가 남아 있는 공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가 화재가 발생하였고,
- 거실에 연기가 차기 시작하자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여는 바람에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어 화재가 커지면서 피해 규모가 확대된 사실을 확인함

□ 검찰과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유족과 피해자 총 35명에게 치료비·생계비를 긴급 지원하였고, 트라우마 극복 등 심리치료도 적극 지원 예정임

□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 1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1 피고인

- A(남, 78세)

### 2 공소사실 요지

- '23. 12. 25. 04:59경 피고인의 아파트 주거지 '컴퓨터방'에서 신문지 등 생활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가득 쌓여 있음에도 계속 담배를 피우며 바둑 영상을 시청하다가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나간 과실로, 그 불씨가 주변 가연물에 옮겨붙어 주거지 및 아파트 같은 동 전체로 불길의 확산되어 약 10억 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고[중실화],
- 피고인에 의해 발생한 불이 확산되어 4층 거주 피해자 B로 하여금 딸(생후 약 7개월)을 품에 안고 1층 바닥으로 뛰어내리게 하고, 10층 거주 피해자 C로 하여금 11층 계단에서 연기를 흡입하게 하는 등 총 29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불을 피해 뛰어내리거나 연기를 흡입하게 하여 B, C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27명을 급성 호흡부전 등 상해에 이르게 함 **【중과실치사상】**

# 2

## 수사 경과

- '23. 12. 25. 화재 발생
- '24. 3. 6.~3. 12. 경찰 구속영장 신청(3. 6.), 검찰 청구 및 발부(3. 12.)
- '24. 2. 6.~3. 13 검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유족 총 35명 대상 치료비·생계비 긴급지원 등
- '24. 3. 15. 경찰, A 구속 송치
- '24. 3. 15.~4. 1.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하여 A 조사, 현장확인 및 화재 감식, 피해가구 전수조사, 손해사정인 상대 손해액 확인, 대검 화재조사팀 화재분석 및 재연실험 등
- '24. 4. 3. 구속 기소

### 3

## 수사 결과

### 1 A의 안전불감증

- A는 주거지에 신문지, 플라스틱 용기 등의 각종 생활 폐기물, 쓰레기가 가득 찬 봉투 등을 버리지 않고 집안 곳곳에 방치하여, 작은 불씨만으로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별지> '화재 진압 후 컴퓨터방 모습' 사진 참조

- A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화재 우려, 흡연에 따른 주민 간 분쟁 발생을 이유로 한 실내흡연 금지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컴퓨터방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바둑을 두거나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수시로 담배를 피우는 등 안전불감증 행태를 보임

- 화재 발생 당일에도 약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계속 피웠음을 확인

### 2 담배꽂초 불씨로 인한 화재 발생 및 확산

- (화재 원인) 화재는 컴퓨터방 책상 주변에서 시작되었고, 컴퓨터방 바닥에서 담배 꽂초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담배 꽂초 외의 다른 화재 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컴퓨터방에서 발견된 담배꽂초들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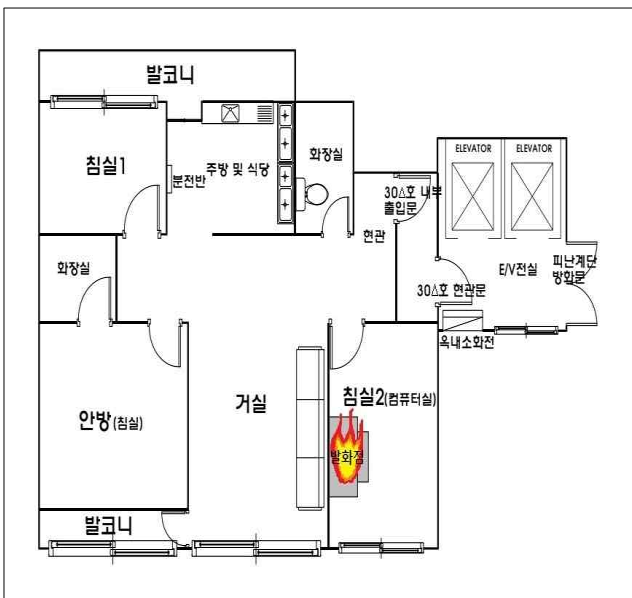
- (중과실) 화재분석 및 재연실험 결과 꺼지지 않은 담배 불씨가 본건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어, 결국 A가 담배를 피운 후 꽂초에 불씨가 남아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끄지 않은 중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규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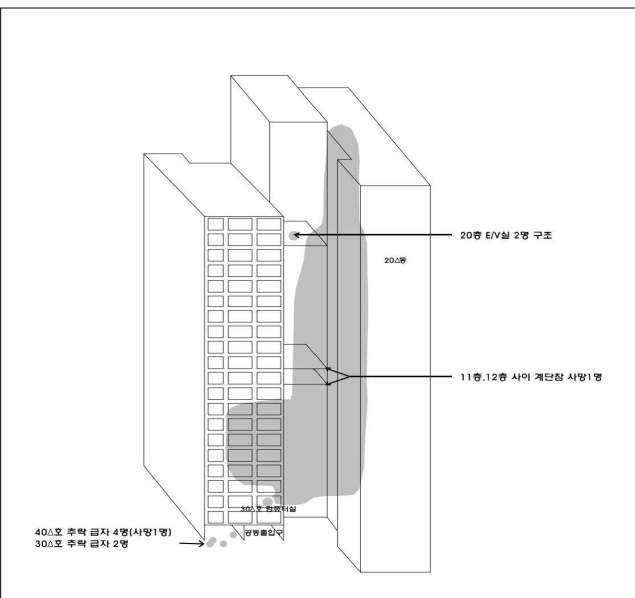
컴퓨터 책상 탄화 모습

- (확산원인) A가 화재 발생으로 연기가 나자 환기를 위해 현관문과 컴퓨터방의 문을 차례로 열어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불길의 견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유독성 연기가 같은 동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었음

- A는 화재가 동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주거지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였음



주거지 평면도 및 발화점



유독성 연기 확산 모습



### ③ 대규모 피해발생의 주된 원인

- 화재 발생 후 불길이 위층으로 번지고 연기가 복도 및 계단에 가득 차 여러 층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생기는 등 인명·재산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음
  - 연기가 확산되는 바람에 현관문을 통해 탈출하지 못한 거주자는 딸을 안고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사망하였고, 다른 거주자는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여 사망하였으며, 화재 발생 후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피해자도 있음
- 피고인이 주거지 현관문을 열 당시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면서 컴퓨터방에서 발생한 화재 연기가 현관까지 번졌는데 마침 아파트 방화문도 상시 개방되어 있어 연기가 차단되지 않은 채 확산되어 같은 동 전체로 퍼진 것이 피해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음
- 한편 집안에서 대기하며 연기가 들어오는 곳을 물수건 등으로 막거나 연기를 피해 반대편 쪽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이 확인되었음

## 4 수사인의 및 향후 계획

### ① 화재 발생의 원인 규명

- 개인 주거지에서 시작된 대형화재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검찰은 화재감식반 조사, 현장 확인, 대검 화재조사팀 감정 및 재연실험 등 다양한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활용하였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꽂초를 제대로 끄지 아니한 A의 증거실이 화재 원인이었음을 명확히 규명하였음


## ② 충실한 피해자 지원

- 검찰과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사상자 및 유족 12세대 33명의 치료비·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중상 피해자 2명의 치료비 전액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음

※ 사망한 피해자 2명에 대한 장례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였음

- 향후에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및 추가 치료비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임

## ③ 향후 계획

-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족 및 피해자들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별지> 화재 진압 후 컴퓨터방 모습

